



제311회 임시회

2012.06.13.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2년 6월 4일
- 회부일자 : 2012년 6월 5일

3. 제안이유

- 2012. 7. 1.자로 본청 기구 개편으로 국별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, 2012. 9. 1.자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이 신설 예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의 사무를 정함(안 제3조제1항·제2항)
- 나. 교육국장 분장사무 중 ‘학교 교육정책의 개발 조정’ 업무를 삭제함(안 제6조제17호)
- 다. ‘기획관리국’을 ‘행정관리국’으로 변경하고,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,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, 주요업무계획의 수립,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,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

립·실시,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, 각종 공약 및 지시사항 삭제(안 제5조의2, 제7조)

라.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‘교육정보화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’과 ‘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’을 삭제함(안 제10조제7호·제10호)

5. 검토의견

- 2012년 7월 1일로 본청 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감 및 부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보좌기관을 정하고, 기획관리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변경하고, 행정관리국장 분장사무 중 지방행정의 기획조정,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, 주요업무계획의 수립, 교육개혁에 관한 사항,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한 업무를 삭제하여 보좌기관 사무로 하는 것으로 이는 본청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기 하고자 하는 것이며, 동년 9월 1일로 충청북도교육정보원 신설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장 업무 중 교육정보화 관련 업무를 신설기관 사무로 하는 것으로 적정한 개정이라 판단됨.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[법률 제10046호, 2010. 2. 26, 일부개정]
제20조 (관장사무) 교육감은 교육·학예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
사무를 관장한다.

5. 학교 그밖의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